



논산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

제31호

##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4. 3. 13.

#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3. 13.  
제 출 자: 논 산 시 장  
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과장

## 1. 제안이유

시민대상 수상자의 결정에 있어 시민대상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을 반영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당연직인 위원장을 선출직으로 변경(안 제4조제2항)
- 나. 수상자 결정에 필요한 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(안 제6조)
- 다. 시상 횟수 변경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기타사항
  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  - 2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  - 3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  - 4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: 2024. 2. 2. ~ 2. 22.
   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 - 5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  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: 충청남도 자치행정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장”을 “논산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중전의 제1항) 단서 중 “재적위원”을 “출석위원”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매년”을 “격년으로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성 명
입 자	자치행정과장 김 일 규
안	행정팀장 변 애 숙
자	담당자 이 도 영 (746-5212)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<u>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③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,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<u>시장이</u> 각각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 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논산시장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수상자 결정은 <u>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.</u></p>	<p>제6조(회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출석위원</u> -----.</p>
<p>제8조(시상) 시민대상은 <u>매년</u>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시상) ----- <u>격년으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○ 해당 없음

**2. 비용추계결과****가. 추계의 전제**

○ 해당 없음

**나. 추계결과**

○ 해당 없음

**3. 작성자**

자치행정과장 김 일 규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